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P&B Policy & Business Report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 P&B Report

## 구성 소개



###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 주요 법률안 소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를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경과: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의회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 국회 일정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 Contents

## I.

---

보건복지위원회 특집	06	1. 구성
	09	2. 관련법령

## II.

---

발의	14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정무위원회
	22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24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4) 탄소세 기본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7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8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8)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환경노동위원회
	32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3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34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III.

소위원회	36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정무위원회
	38	1)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40	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2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6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49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2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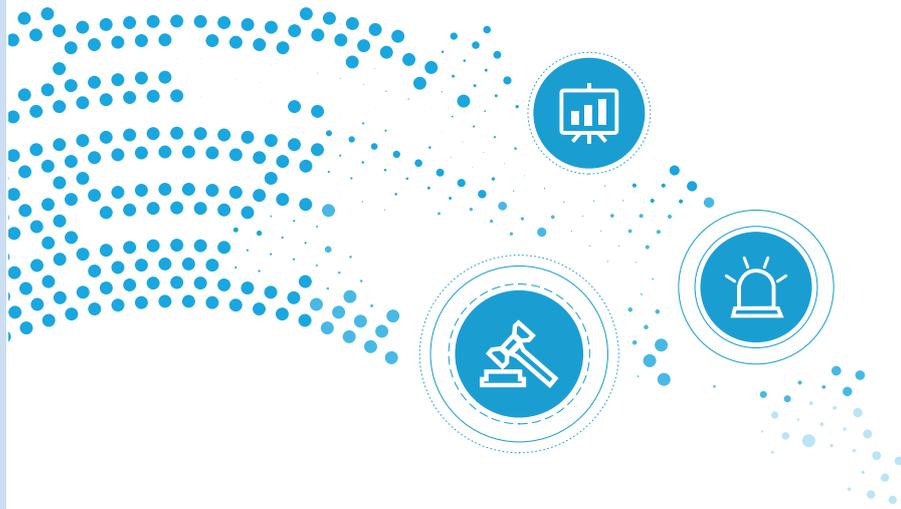
### IV.

상임위원회	62	1. 상정 법률안 목록
-------	----	--------------

### V.

본회의	66	1.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67	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4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0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0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 I.

## 보건복지위원회 특집

1. 구성
2. 관련법령

#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위원정수 24    현원 24    더불어민주당 14    국민의힘 9    비교섭단체 1



위원장  
**정 춘 속**

선 거 구    경기 용인시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20대, 21대)

##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 훈 식**

충남 아산시을  
재선(20대, 21대)



위원  
**강 선 우**

서울 강서구갑  
초선(21대)



위원  
**고 영 인**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초선(21대)



위원  
**김 민 석**

서울 영등포구을  
3선(15대, 16대, 21대)



위원  
**김 원 이**

전남 목포시  
초선(21대)



위원  
**남 인 순**

서울 송파구병  
3선(19대, 20대, 21대)



위원  
**서 영 석**

경기 부천시정  
초선(21대)



위원  
**신 현 영**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인 재 군**

서울 도봉구갑  
3선(19대, 20대, 21대)



위원  
**전 혜 속**

서울 광진구갑  
3선(18대, 20대, 21대)



위원  
**최 중 운**

경기 하남시  
초선(21대)



위원  
**최 혜 영**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한 정 애**

서울 강서구병  
3선(19대, 20대, 21대)

##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경남 창원시성산구  
재선(19대, 21대)



위원  
**김미애**

부산 해운대구을  
초선(21대)



위원  
**백종현**

부산 금정구  
초선(21대)



위원  
**서정숙**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이종성**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조명희**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최연숙**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최영희**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최재형**

서울 종로구  
초선(21대)

## 정의당



위원  
**강은미**

비례대표  
초선(21대)

## 소관기관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국립재활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복지위원회 유관기관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관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공공기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질병관리청 소속기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국립보건연구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5)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법률

부문	번호	소관법률
보건복지부	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3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공중위생관리법
	5	구강보건법
	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	국민건강보험법
	8	국민건강증진법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11	국민연금법
	12	국민영양관리법
	13	기초연금법
	14	긴급복지지원법
	1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6	노인복지법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20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2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공동소관)
	23	모자보건법
	2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	보건의료기본법
	26	보건의료기술진흥법
	27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28	사회보장기본법
	2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3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1	사회복지사업법
	3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3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3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35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36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7	아동복지법
	3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39	암관리법
	40	약사법(공동소관)
	41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법회의

부문	번호	소관법률
보건복지부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3	의료급여법
	44	의료기기법(공동소관)
	4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46	의료법
	4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4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동소관)
	50	입양특례법
	5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5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5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5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56	장애인복지법
	57	장애인연금법
	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5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6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6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62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6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동소관)
	6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공동소관)
	6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6	지역보건법
	67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68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69	치매관리법
	7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7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7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73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74	한의학 육성법
	75	혈액관리법
	7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7	희귀질환관리법
	78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8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8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8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83	환자안전법
	8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8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8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8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부문	번호	소관법률
보건복지부	88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9	노후준비 지원법
	90	아동수당법
	9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92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9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9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동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공동소관)
	4	식품안전기본법
	5	식품위생법
	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8	약사법(공동소관)
	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0	의료기기법(공동소관)
	1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동소관)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13	화장품법
	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	위생용품관리법
	1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8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1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동소관)
	20	체외진단의료기기법
	2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공동소관)
질병관리청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동소관)
	2	검역법
	3	결핵예방법
	4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	보건환경연구원법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보건복지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법회의





## II. 발의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 발의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회규제입법정책처법안
		3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9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정무위원회	O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O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공기업을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탄소세 기본법안				
1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7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안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O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한국방송공사법안	
	외교통일위원회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9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11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1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	
		37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3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39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문화재영향진단법안
			14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1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5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산림재난방지법안
		1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한우산업기본법안
		2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O	22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2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환경노동위원회		3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O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O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2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O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8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토교통위원회		2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3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보위원회		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1

정무위원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8960호



김 한 규

선 거 구 제주 제주시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횡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12.15	제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드시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대방을 통하여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들이 폭리를 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물가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하고 있음.

현행 가맹사업법상 필수물품의 범위와 기준이 불분명하여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고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에서 10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방침의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의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매년 계약갱신을 무기로 불이익을 강요하며 가맹본부에 비판적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길들이기, 단체활동 방해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을 없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2조의8 신설, 제13조제2항 삭제 등).

# 2

정무위원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9424호



정우택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정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5선(15대, 16대, 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3.01.11. 제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p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 대출금리가 8%대의 고공행진 중인데 반면, 지난해 말 연 5%대였던 시중 은행들의 예금금리는 한 달 만에 3%대로 급락하였음.

가계 빚이 1870조 원을 넘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연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쓰는 실정임. 특히 저성장 경제위기 및 경제 고통지수 장기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에 대출을 이용한 사람들은 부동산값 급락과 고금리 이중고에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있음. 그럼에도 지난해 8개 은행 이자이익만 53조 원, 직원들에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보건복지위원회 특집

발의

수원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법회의

# 3

기획재정위원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9221호



**양 경 숙**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12.28. 제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산출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일정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을 법인세액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국 등에서는 전기·가스업체를 대상으로 25%의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섰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세율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인에 대한 초과소득세를 신설하여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의 20%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55조의3 신설).

# 4

기획재정위원회

## 탄소세 기본법안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9131호



기 동 민

선 거 구 서울 성북구를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12.26.	제안

### 제안이유

현대사회에 이르러 산업발전, 에너지 사용 및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탄소발생이 급증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이상기후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감축하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체계적인 추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탄소세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현재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기후변화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탄소세 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발유, 가스, 석탄, 그 밖에 화석원료 등이 에너지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등에 사용될 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그 물품을 탄소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세율을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sub>2</sub>-eq) 당 5만원으로 함(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나. 과세물품에 대한 세율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달성, 세액의 조정 등의 사유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항).
- 다.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1단위를 연소할 때 배출되는 총 온실가스의 양(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것)과 물품의 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하고,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으로 함(안 제6조).
- 라. 과세물품을 제조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 단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9조).
- 마.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저유소에서 혼합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과세시기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10조).
- 바. 미납세 반출, 군납 면세, 외교관 면세 등을 규정하여 탄소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사. 온실가스 배출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으로 탄소세를 대

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아.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의 영업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승계인이 피승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 21조).

자. 탄소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 탄소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 및 검사, 납세 보전을 위한 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함(안 제 22조부터 제25조까지).

#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9136호



고민정

선 거 구 서울 광진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12.26.	제안

### 제안이유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포함해 이용약관 신고 중인데, 통신장애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 신고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사업 운영에 있어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없어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신고 제도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8조제4항제3호 및 제28조의2 신설 등).

보건복지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법회의

# 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9324호



**김정재**

선 거 구 경북 포항시북구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3.01.04.	제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 결과 기업들은 지방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력 확보 지원, 세제 혜택 및 설비투자, 사업장 부지 제공이 높게 나타났으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미흡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산업단지 조성 지원, 정주여건 개선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 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8981호



김 경 만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12.16.	제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시 해당 거래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지급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보험회사가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를 위탁하는 경우와 같은 일부 수탁·위탁거래 분야에서 위탁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탁기업에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거나 납품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표준하도급계약을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과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9220호



이 철 규

선 거 구 강원 동해시태백시  
삼척시정선군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횡 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12.28. 제안

### 제안이유

전기는 경제성장, 국민 생활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재로서 전기차 보급, 4차 산업 혁명 확산,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수요 증가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최근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전기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전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 부재하여 전기 및 전기산업의 정의와 범위, 전기산업 관련 정부 정책의 원칙, 지원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고,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은 해당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기사업의 체계적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전기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전기산업의 혁신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전기, 전기기술, 전기산업, 전기설비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다.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력 공급의 안정성 유지 등 기본원칙을 마련함(안 제3조).

라.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함(안 제5조).

마.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보급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세제·금융지원과 그 밖의 행정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관리·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9

환경노동위원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9018호



하 태 경

선 거 구 부산 해운대구갑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3선(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12.20.	제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회계감사원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원이 해당 감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자료 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감사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현재 회계감사원의 자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불명확함. 한편, 행정관청에 대한 자료 보고의 범위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노동조합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법인·감사반 등으로 한정하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대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재정·회계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2항 등).

# 10

환경노동위원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9299호



이 주 환

선 거 구 부산 연제구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3.01.03. 제안

### 제안이유

전기차, 수소차 등 운행단계에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세계 주요국과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은 무공해자동차로의 전환에 나서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동안 구매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충전시설도 신속히 확충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펼쳐왔고, 그 결과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이 도입 초기단계를 넘어 최근 급증 추세에 있으나, 무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환경적으로 우수한 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운영을 지원·관리하는 내용이 저공해자동차 중심으로 규정되어있어, 무공해자동차 정의,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무공해자동차 중심 저공해자동차 보급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공해자동차의 한 종류로서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성능평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성능평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성능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성능평가를 받거나, 성능평가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

다.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미승인 시 제재 수준을 당초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함(안 제94조).

# 11

국토교통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9321호



장 철 민

선 거 구 대전 동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3.01.04.	제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런데, 행위자인 건설업자에 대해서 이 법 제98조 양벌규정이 부재하여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입법미비가 지적됨.

이에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양벌규정에 명시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적정시공과 책임성 등을 강화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2항).



# III.

##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무위원회		1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3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4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5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6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7	가상자산업법안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12	디지털자산거래법안
		13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1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7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8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16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17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18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19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O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O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O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법회의

# 1

정무위원회

##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윤창현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994호



윤 창 현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10.31.	제안
소 위 원 회	2022.11.22.	상정
	2022.12.26.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2.11.21.)

### 제안이유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여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2018년 1,700억원 수준이었던 디지털자산 불법행위 검거규모가 지난해 3조 1,300 억원으로 18배 이상 급증하고, 언론보도에서도 디지털자산의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가 빈번하게 다뤄지고 있음.

특히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다수 이용자의 대규모 피해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앞당기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급하게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할 필요성과 이유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 국제적 논의동향과 글로벌 기준 마련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이를 보완해가는 점진적·단계적 입법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임.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번 제정안에서는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가상 자산 관련 14건의 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반영하였음.

그래서 동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디지털자산사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이용자 예치금 보호 등),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 금지, 자율감시(시장 감시와 신고의무 부과 등) 책임 등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집중하였음.

디지털자산의 발행·상장·공시와 디지털사업자의 진입·영업행위(신의성실 의무, 설명 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광고규제 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규율방안은 2023년 중 디지털자산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방향을 반영하여 보완하고자 하며, 금융위원회가 추후 이루어질 보완입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내용과 제출시한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디지털자산은 기존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를 준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하고, 덧붙여 디지털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시장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과 디지털자산의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조부터 제7조까지).

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자기발행 디지털자산 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조사권한, 시정명령·영업정지·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이 법에 의해 금융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시장 및 사업자를 감독·조사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거의폐회의

# 2

정무위원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641호



송 언 석

선 거 구 경북 김천시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1.28.	제안
상임위원회	2022.05.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소위원회	2021.11.22.	상정
	2022.12.26.	상정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시중 은행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의 증가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당국의 은행 금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 미흡함.

이에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참고자료

【표1】은행의 예금금리 구성

- ① 기본금리: 시장금리(은행채)-제비용(예보료+지준율+업무원가)±조정항목
- ② 우대금리: 본점부서 결정 우대금리+부수거래 총족 우대금리

(자료: 금융위원회)

【표2】은행의 대출금리 구성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③ 가감조정금리		
	원가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	기타		
업무 원가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 비용	교육세, 출연료, 예보료, 지준예치금	목표 이익률	부수거래 감면금리	분부·영업점 조정금리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2019.1.22.)

【표3】예금은행의 가중평균금리

(단위: %, %p)

		2020.12	2021.8	2021.10	2021.12	2022.1	2022.3 <sup>P</sup>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A)	0.90	1.03	1.29	1.70	1.65	1.74
	- 순수저축성예금	0.90	1.00	1.28	1.67	1.64	1.71
	- 시장형금융상품	0.95	1.15	1.34	1.82	1.68	1.90
	대출금리(B)	2.74	2.87	3.07	3.25	3.45	3.50
	- 기업대출	2.73	2.78	2.94	3.14	3.30	3.39

신규 취급액 기준	· 대기업 대출	2.51	2.56	2.67	2.86	3.03	3.12
	· 중소기업 대출	2.89	2.93	3.14	3.37	3.52	3.57
	- 가계 대출	2.79	3.10	3.46	3.66	3.91	3.98
	· 주택담보대출	2.59	2.88	3.26	3.63	3.85	3.84
	금리 차(B - A)	1.84	1.84	1.78	1.55	1.80	1.76
잔액 기준	총 수신 금리(C)	0.75	0.67	0.73	0.83	0.88	0.96
	총 대출 금리(D)	2.80	2.79	2.89	3.04	3.12	3.28
	금리 차(D - C)	2.05	2.12	2.16	2.21	2.24	2.32

주: p는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4]시중은행의 총수익, 이자수익,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조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총수익	46.0	47.3	48.5	53.0
이자수익	40.5	40.7	41.2	46.0
(비중)	(88.0)	(86.0)	(84.9)	(86.8)
당기순이익	15.6	13.9	12.1	16.9

(자료: 금융위원회)

# 3

정무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0518호



박 용 진

선 거 구 서울 강북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6.16.	제안
	2020.07.29.	상정
		제안설명
상임위원회	2020.07.29.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2021.02.23.	상정
	2021.03.17.	제안설명
		상정
	2021.03.22.	제안설명
		상정
	2021.04.26.	상정
	2021.06.23.	상정
	2021.11.17.	상정
	2021.11.23.	상정
2022.11.22.	상정	
2022.12.26.	상정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부당이득이 산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부당이득만 취득하였다고 보아 수사기관이 청구한 몰수·추징 또는 과징금 부과를 선고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기본적으로는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하여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3조의2 신설).

### 참고자료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구분〉			
구분	내용	제재처분	
불공정거래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제174조)	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자가 상장법인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회사의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또는 타인(1차 수령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시세조종(제176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켜 합리적인 가격결정과 자유로운 수급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부정거래(제178조)	투자자를 기망하여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풍문 유포, 거짓시세이용, 중요정보의 부실표시 등)	
시장질서교란행위(제178조의2)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경미하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제17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과징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정형>

부당이득액	벌금형 (징역형 없이 단독부과 가능)	징역형 (벌금형 병과)
0~1억원 미만 (액수미상 포함)	하한 : 부당이득액의 3배 상한 : 5억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하한 : 부당이득액의 3배 상한 : 부당이득액의 5배	상동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상동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상동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보건복지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법회의

# 4

정무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096호



김 경 만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11.03.	제안
상임위원회	2022.11.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2022.12.28.	상정

### 제안이유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0년 말 대비 올해 공급원가가 26.4%나 상승했음에도, 이를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은 6.2%에 불과함.

이처럼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및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시장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서면으로 정한 바에 따라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10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9항 신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 참고자료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IV.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
- 1.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해당 여부 심사기준

나. 법 제4조 제1항의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은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같거나 유사한 것"의 판단은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과정, 공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된 대가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되는 대가를 적용한다.

- ① 목적물 등과 같은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 ② 목적물 등과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 ③ **중전에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원자재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대가**
- ④ ~ ⑥ (생략)

(3)"낮은 수준"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 의 차액규모, 목적물 등의 수량과 해당 시장 및 전·후방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267호



김희곤

선 거 구 부산 동래구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9.06.	제안
상임위원회	2022.11.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소위원회	2022.12.15.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상정
		축조심사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과 수사·정보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근거로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지는 등 통신자료라는 지극히 개인의 내밀한 사항에 관한 정보가 아무런 통보 없이 기관에 제공되어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의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제공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고지되지 않고,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별도 통지하지 않는 등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입법 공백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하여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일 이내 제공한 자료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통보하도록 정함(안 제83조의2제1항 신설).

나. 안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유예절차를 정함(안 제83조의2제2항, 같은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참고자료

〈타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구분	검찰청	경찰청	공수처	국정원	국방부	통신사
통지주체	통신사	통신사	통신사	수사기관	통신사	수사기관
통지시기(제공후)	1년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	-	30일 이내	-

통지 유예기간	3개월	6개월 (추가 6개월)	6개월	사유 해소시 까지	6개월	-
통지내용	제공일, 요청기관, 제공내용, 근거법령	요청일, 제공일, 요청기관, 사유, 제공사실, 요청문서 번호	-	-	요청일, 제공일, 요청기관, 요청사유, 제공사실	-
통지방법	전자우편, 문자 등	서면,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	서면, 이메일, 문자	전자우편, 문자 등	서면, 전자우편, 문자	서면, 문자 등
비용부담	수사기관	수사기관	-	수사기관	-	수사기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자료’ → ‘통신이용자정보’, ‘통보’ → ‘통지’ 용어변경은 모두 동의</li> <li>▪ 통신사업자가 통지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과다하다는 통신사업자 의견</li> </ul>					

주요발언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 박주민 의원



경찰청 차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너무 많은 통신자료 요구, 거기에 따른 제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님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수처의 통신자료 요구 및 그것에 따른 자료 확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어딴냐’ 하면서 굉장한 분노를 표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뭔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만

약에 통신업체가 사후 통지 의무를 가지면 통신업체들은 아예 안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면 사전에 영장주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아예 이 제도는 없어져 버리는 것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혹시 경찰청이나 검찰,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이 통신업체들에게 법적 의무는 없지만 무섭게 해 가지고 받고 그럴 것도 아니면 사실 이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경찰청차장 우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편의주의적으로—아까 고민정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이 자료를 요청하고 이랬던 것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부인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도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 하셨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무조건 다 영장주의로 가는 게 맞느냐 이것은 우리가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

로 그것은 최소화하고, 다만 기간통신이라는 것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민간기업이기는 하지만 공공재로서의 책임은 여러 가지 범죄수사나 이런 것에도 어쨌든 어느 정도 협조하고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정통부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양 기관이 협의를 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조승래



차장님, 참 위험한 사고를 하고 계시네요. 공적인 기관은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까? 본인의 동의 없이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 경찰청차장 우중수



아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 소위원장 조승래



그것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러면 저는 거꾸로 그렇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훨씬 더 엄격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경우만 딱 정해서 법에 규율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 그렇게 최소화시켜야 돼요. 나머지는 영장을 받아서 해라 이거지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쪽으로 우리도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전반기 과방위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경찰에서 큰일난다고, 통지하게 되면 도둑놈들 다 도망간다는 이런 식으로 호들갑을 떨다가 결국은 위헌 판결이 된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맥락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제 이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의 결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는, 그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 취지가 그것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하라라는 취지인 것이지 통지를 하라는 단순한 취지만 있는 것은 아

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장주의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고지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 이것 가지고 논의하면 행정기관에서는 당연히 사업자가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것은 물론 적절한 결론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도 조금 더 숙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6

## 환경노동위원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967호



권명호

선 거 구 울산 동구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10.27.	제안
소위원회	2022.12.26.	상정
		축조심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2.12.2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등을 정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연장과 관련된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제도의 도입 및 절차 등이 복잡하여 제도가 안착되지 않고 있으며, COVID-19의 영향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의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시간의 추가 연장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제도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가 근로현장에 안착하는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 주요발언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 ■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저희는 2년 연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일단 5~29인 사업장이 아니겠지만 추가 연장근로를 부여한 이유는 상시적인 인력난이 있었기 때문에 52시간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부여한 내용인데 아니겠지만

지난 2~3년간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 부족 현상은 더 심화가 된 상황이고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상당수 기업들이 일단 연장에, 52시간 적응에 좀 힘이 들어 하는 상황이고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대개 소규모 사업장이고 월평균 임금도 적고 40대 이상 비중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

에 여러 가지 소득 여건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번 도입할 때도 저희가 소위 3년 연장에 대한 추가 연장을 논의할 때도 그때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했고 지난, 아니겠지만 주 40시간제 도입 시에도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거의 7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재 현행법상으로 1명의 근로자가 한 번이라도 52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으로 위반이 되고 적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략)

■ 이수진(비) 위원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 입장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논의하는 30인 미만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고용노동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주 52시간 노동체제가 아주 어렵게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있습니다. 2018년 개정 당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부담과 준비기간 등의 필요성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 2년간 주 52시간 상향제의 예외로서 1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60시간 일을 시킨 거지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고 싶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해서 사실상 5년이라는 충분한 준비시간이 주어졌고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완화, 어마어마하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지요. 이렇게 유연근무제도가 확대·보완 시행된 것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제의 정착을 무력화시키는 일몰연장 주장의 문제점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무력화 시대에 따른 현상의 변화입니다. 올해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 52시간제

를 적용 중인 기업 555개—5인 이상 29인 미만 사업장 비중 54.2%입니다—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사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52%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66.1%가 주 52시간제의 시행에 대해서 ‘문제가 없음’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단지 10%만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2021년 4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중기부, 중협 공동조사 결과를 보면 93%가 ‘범 준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언했던 주 52시간 노동체제의 무력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혁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무려 5년 간의 준비시간이 주어졌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에 바뀌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가 30인 미만 제조업 400개소 대상으로 해서 올해 10월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로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은 91%, 추가 연장근로 일몰 종료 시 대응 방안 없음이 75.5%라고 합니다.

불과 5개월 만에 이렇게 뒤바뀐 현장 실태조사 이것 급격하고 일시적인 경제위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시장의 충격은 지난 3년간 서서히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고 그때가 더 심했지요. 결국 이런 변화는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부터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시장에 시그널을 보냈던 노동시장, 노동시간 유연화 이게 핵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 직무유기와 이율배반입니다. 그동안 뭐 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안착을 위한 준비나 사업

장 지도는 포기하고 기업의 이해만 대변하는 통계와 근거를 편취하고 또 일몰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이율배반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몇 개월 사이 이렇게 변한 모습.

고용노동부가 12월 초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담은 2장짜리 문서에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력 부족과 준비 부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이 3.9%밖에 안 됩니다. 30인 미만 인력 부족률 3.7%보다도 높습니다. 오히려 더 그 위에 사업장이 높은 걸 보시면 알 수 있고 특히 음식 서비스업은 전체 부족률이 6.5%, 제조·단순직은 7%로 상당히 높는데 결국 이런 결과들은 인력 부족이라는 것이 규모보다는 업종별 특성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런 이상한 근거가 담긴 2장짜리 문서를 가지고 일몰 연장을 위한 설명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 친자본 노동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자기 이율배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1년 6월 발표한 5인 이상 49인까지의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 지원 관련 브리핑에서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 제도 보완, 정책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또 향후에도 범부처 차원의 기업지원 확대를 통해서 주 52시간제를 안착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의 8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고 90% 이상이 주 52시간제 준수 가능하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본인들이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주 52시간제 안착에 있어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문제가 없고 이것은 현장에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다. 앞으로도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 지원 확대를 통해서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해서 52시간제 안착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과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태도가 돌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고용노동부 직무유기이자 이율배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과로사 공화국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은 지난 2018년 법 개정 이후 올해 말 일몰로 인해서 주 52시간제가 정착되는 것을 가로막고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인 과로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문제입니다. 산자부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라 노동부가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

노동자들이 알고 있나 싶습니다. 이 과로에 대해서 업무상 질병의 산재 기준을 제시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보시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일주일에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발병 전 4주 동안 일주 평균 64시간 이고요.

우리나라가 한 해 산재 과로사가 500여 명이 넘는 과로사 공화국입니다. 일주일에 60시간을 30인 미만 사업장, 약 680만 명에게 강요하는 이 일몰연장이게 국회가 앞장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5년이라는 충분한 준비시간이 주어졌고 그동안 유연근무제 완화 등 다양한 보완 정책도 시행됐

습니다. 해 달래서 다 해 드렸지 않습니까. 중기중앙회가 주장하는 필요성도 결국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 때문입니다. 정부가 근거자료도 신빙성도 의심되는 그런 상황에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약 680만 명 노동자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기보다 범부처 차원의 지원 강화를 통해서 10여 년간 사회논의 끝에 어렵게 통과시킨 이 주 52시간제를 조속하게 안착시키는 것이 저는 국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2018년 주 52시간 상한제 법개정 이후에 1967시간에 달하던 연간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돼서 작년에는 1915시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십시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346호



**이은주**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정의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9.14. 제안
상임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2022.11.17.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소위원회부
	2022.11.30. 상정
	축조심사
	2022.12.07. 상정
	축조심사
2022.12.26. 상정	
축조심사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정하고 있어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아울러, 노조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게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이외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다.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힘(안 제2조제5호).

라.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그 쟁의행위등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

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도 노동쟁의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조합원수·조합비·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사.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 참고자료

<표> 불법 쟁의행위 요건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건수<sup>주)</sup>

(단위: 건)

주체 부당		목적 부당		절차 부당		수단 부당	
주체만	타 요건과 결부*	목적만	타 요건과 결부*	절차만	타 요건과 결부*	수단만	타 요건과 결부*
8	-	8	2**	4	1***	25	10
	8		6		3		15

주) 고용노동부 실태조사결과에서 중복건수를 포함하여 편집한 것임

\* 해당 요건 외에 다른 요건 등과 결부되어 부당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를 말함

\*\* 고용노동부 실태조사결과에서는, 노조전임자 수, 처우 보장, 공장 증설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

\*\*\* 고용노동부 실태조사결과에서는, 쟁의행위의 동기(임금 미지급 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90% 감경한 사건이라고 설명

### <손해배상·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및 판결분석>

#### 총 관

#### ■ 손해배상 소송은 민노 소속 사업장에 집중

- 민노를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소송건의 94%(151건 중 142건), 전체 청구액의 99.6%, 인용액의 99.9%

#### ■ 손배문제는 노사관계 전반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움

- 전체 손배액은 일부 대규모 사업장(9개)의 분쟁이 대다수를 차지(전체 청구액의 80.9%, 인용액의 93.6%), 나머지 64개소는 전체 청구액의 19.1%, 인용액의 6.4%

#### ■ 손배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사 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음

- 제기된 손배소송 중 절반 이상(52%)이 소취하 등을 통해 해결

#### ■ 노조에 대한 손배소송의 인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체 민사 손배소송의 인용율 57.1%에 비해 노조에 대한 손배소송의 인용율은 67.1%로 높음(불법(쟁의)행위로 인정한 판결은 73%)

- 법원은 손해액, 책임자를 제한
  - ①불법(쟁의)행위이더라도 손해 발생 또는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책임을 인정하고, ②일반 조합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③손배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 불법(쟁의)행위 동기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책임을 경감(66.7%)
- 손해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장 접거
  - 손해배상 청구 원인의 절반 가량이 사업장 접거에 의한 생산라인 중단 등에 따른 손실로 (31건, 49.2%), 인용율은 90.3%, 전체손배 청구 인용액(332.2억)의 98.6%(327.5억)를 차지
  - 사업장 접거는 대부분 위력이 사용(93.5%)되거나 그 과정에서 폭행·상해가 수반(71%) 되는 문제 발생
- 불법쟁의행위로 손해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주로 수단이 문제
  - 대부분 수단부당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었고(89.3%), 위력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을 접거한 경우가 절대 다수(88%)를 차지
- 법원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청구액이 다액이라는 이유로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음
  -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사용자에게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 청구 권리가 있고,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오로지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 해외사례 >

※ 국가별 전문가를 통해 대륙·영미계 대표국가인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의 법규·판례 등 문헌조사를 기초로 기존 발표·조사된 해외사례 연구 등을 종합

1. 면책 규정

- ☞ 대부분 국가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면책 규정(일본·영국은 법률로 명시, 프랑스·독일 등은 판례로 규율)
- 그러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음
- ☞ 우리나라도 정당한 행의행위에 대한 보호는 법률 규정을 통해 명확화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음

- (일본) 헌법 상 노동3권 보장, 법률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노동조합법 제1조제1항, 제8조)
- \* 학설과 판례는 ①주체(노동조합), ②목적(근로조건의 유지 향상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영권에 대한 사항 등도 포함), ③절차(단체교섭 등을 거쳐야 함), ④수단(배타적·전면적 직장접거 등 불가)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
- 판례도 노동3권에 의해 보호되는 행위 전반에 대해 정당한 경우 민·형사 면책(다른 헌법적 법익 등과 비교 형량하여 제한)

- 정당성을 결한 경우까지 노동조합·조합원의 민·형사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음
- (영국) 개인의 행위가 노조법 상 정당한 쟁의행위(대상, 절차 준수)인 경우, 일정한 민사책임을 면제
- (대상) 민사책임이 면책되는 쟁의행위 목적은 단체교섭 대상(7가지)과 전부 또는 주된 관련성이 존재해야 하여야 함

☑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요건(§244)

1. 고용조건 또는 근로자가 근무해야 하는 물리적 조건 2. 근로자 채용이나 채용거부, 고용의 종료 또는 정지, 고용상의 의무
3.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간 일이나 고용상의 의무의 분배
4. 징계 5. 노동조합원 자격 6. 노동조합 임원을 위한 편의 제공
7. 교섭, 협의 또는 기타 절차에 있어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자대표권의 인정 및 1 내지 6의 사항에 대한 교섭, 협의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

- (절차) 사용자가 인정한 노동조합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사전통보를 거쳐야 면책 가능
- \* ①쟁의행위 찬반투표: 투표할 자격을 가진 조합원 절반 이상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 ②쟁의행위 사전통지: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14일 전 사전통지 등
- (면책 범위) 법률 상 민사책임이 면제되는 범위\*를 별도로 규정
- \* ①계약 위반 · 방해의 유인, ②계약 위반 · 방해에 대한 위협 및 이에 대한 ③공모 등

- (미국) 법률 상 명확한 규정은 없음. 다만, 판례상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프랑스) 파업 참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 금지\* 외 민사면책 관련 법률 규정은 명확히 없으나, 판례상 적법 파업의 경우 민·형사 책임 면제
- \* 파업권의 행사는 근로계약의 파기를 정당화할 수 없고,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종과실의 잘못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노동법전 L, 2511-1조)

[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관련 과거 입법사례 ]

☑ “집단적 노동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모든 민사책임 소송”을 금지하고 “형사 범죄로 인한 손해나 파업권 및 노조권의 행사와 명백히 결부시킬 수 없는 사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예외로 한다”는 입법 추진(1982년)

→ 헌법재판소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의 피해자에게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배상권을 부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존재

- (독일) 별도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다수설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정당하지 않은 파업 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인정\*
- \* 손해배상청구권은 독일 민법 제280조 제1항 및 제276조(채무불이행), 제823조 제1항(불법행위)에 의해 인정

2. 손해배상 청구(또는 책임 인정) 대상이 되는 불법(쟁의)행위 양태

- ☞ 일부 국가(일본, 영국 등)는 우리나라와 같이 쟁의행위 목적, 절차 등이 위법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대부분 폭력·파괴행위 외에도 사업장 점거 등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 (우리나라와 유사)

- (일본) 단순 노무제공 중지라도 목적·절차 등에 의해 쟁의행위 전체 정당성이 부정된 경우\* 손해배상 인정 사례 존재
  - \* 평화의무 위반(49), 동정파업의 정당성 부정(75), 사전 예고 파업일시를 어겨 정당성 부정(00) 등이 해당
  - 사업장 점거 등 적극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
  - \* 피켓팅에 의한 영업 방해, 출구 저지, 사업장 점거 등 적극적 행위(09, 88년 등)
- (프랑스) 파업 참가자가 행한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주로 문제시
  - 대표적 중과실 행위는 근무 장소 무단점거나 출입구 봉쇄로 사용자 조업 방해\*, 피켓팅으로 여타 근로자 근로자유 침해 등이 있음
  - \* 파업 중에 공동으로 감행된 운송기업 근로자들의 (타인의) 근로자유에 대한 침해행위로 두 대의 버스차량의 출발을 방해한 경우(cass. soc. 10 février 2009, n° 07-43.939) 등
- (미국) 연방노동관계법 상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303)을 위반하거나,\* 단체협약의 파업포기 조항을 위반(§301)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 불법 피켓시위, 폭력 등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303) 중 2차 보이콧, 일자리 배치 요구, 사용자에게 특정 노동조합(과) 인정 또는 교섭할 것을 강요 또는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 (영국) 쟁의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 위법적 피켓팅, 근로계약 이행 위반 권유 등 발생 시 손해배상 인정 가능

### 3. 손해배상 책임 범위

- ☞ 법률로 개인(임원, 일반조합원)에 대해 면책을 규정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
- ☞ 일본·독일·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뿐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 인정됨
  - \* 그러나, 실제로 일반조합원에 대한 청구사례는 적은 것으로 파악됨
  - ※ <참고> 우리나라는 판례 법리에 의해 개인의 과실여부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제한\*하고 있음
  - \* 일반 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 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음(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 (일본)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다만, 사업주가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향
  -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709조), 부진정연대책임 등
- (영국) 일반적으로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승인·지지한 경우)과 노조 임원이 파업과 관련한 불법행위 책임 주체
  - 다만, 불법행위 참가 근로자는 보통법(민법)에 따라 고용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 이때 손해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부터 비롯된 손해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근로제공거부라는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로, 그 대체노동자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판례 존재(National Coal Board v. Galley, 198)
- (미국) 연방노동관계법 규정과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또는 개별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위법한 파업으로 손해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연방노동관계법 제303조)

- 노동조합이 불법행위를 승인·추인 등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노리스-라과디아법(Norris-LaGuardia Act) 제6조(29 U.S.C.A. § 106)

- (프랑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개인 책임, 노조는 (불법)행위 지시로 손해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 배상책임 부담

\* 일반 근로자에게 파업권 행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파업 참가자의 행위가 범죄행위 등 중대한 과실에 이른 경우 해고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도 부여

- (독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사례는 찾기 어려우나,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

#### 4. 손해배상액 산정 및 제한

☞ 손해배상액 제한은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 영국은 상한액을 정하고 있으나 ①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②노조에 적용되지만 개인 상해, 재산의 소유·점유 등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

☞ 일본·미국 등은 사용자 손해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 판결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우리나라와 유사\*)

\* 쟁의행위의 동기(임금 미지급 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책임을 최대 20%~90%까지 감경

- (영국) 노조의 위법한 파업(unlawful strike)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액 설정

• 최근 기존 상한액을 4배 인상('22.7.21., 시행규칙 개정). 다만, 손해 상한액은 개별 불법행위마다 별도 적용되어 복수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이 청구될 경우 배상액이 수백만 파운드에 이를 수 있음

\* 순수 손해배상액에만 적용되며, 이자·소송비용·부당이득 등은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

• (적용 제외) 과실·불법방해 등으로 야기된 개인 상해, 재산의 소유·점유 등과 관련한 의무위반 소송 등에는 적용 제외\*

\* 우리나라의 사업장 점거 등으로 인한 불법 쟁의행위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

• (개인) 노동조합 간부 등 개인에 대해서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개인재산은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음

노동조합 조합원 수	손해배상 상한액	
	'22.7.20. 이전	이후
5,000인 미만	1만 파운드	4만 파운드
5,000인 이상 ~ 25,000인 미만	5만 파운드	20만 파운드
25,000인 이상 ~ 100,000인 미만	12만 5천 파운드	50만 파운드
100,000인 이상	25만 파운드	100만 파운드(약 16억원)

- (일본) 법률 상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판례 법리를 통해 사용자측 과실을 손해액 산정에 반영하는 등 감경 가능

\* 불시파업의 예측가능성, 불시파업에 대한 사전대책마련 가능성 및 필요성, 관련 부당노동행위존재, 노사관계의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30% 상계('00.7.14, 国鉄千葉動勞 사건)

- (미국) 판례는 손해액을 노동력 축소로 인한 과도한 제조비용, 낭비된 고정비·경상비, 불법적 행위에서 야기된 사용자 손해 등을 참작하여 산정  
\* 손해의 정확한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거나 가능하지 않을 수 있지만 증거가 있으면 배심원들이 손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 추정 가능
- (기타) 개인 책임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압류 한도를 정한 국가 존재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급여의 1/2은 압류금지. 단, 급여의 1/2이 최저생계비(월 187만원) 미달시 최저생계비 압류 금지

국가	압류 한도 규정
일본	· 조합원 개인 급여의 3/4 압류 금지, 3/4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생계비를 미달할 경우 표준생계비 압류 금지
미국	· 사용자는 법원에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으나, 1주일 동안 받는 순임금의 25% 또는 연방 최저시급의 30배를 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캘리포니아 주)
독일	· 부양해야 하는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임금의 압류 제한 범위 설정

주요발언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 임이자 위원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에 의해서 날치기 상정된 노조법 2·3조는 헌법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 민주당에 의해서 일방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2000만 노동자를 위한 법이 절대 아닙니다. 전체 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돼 있는 14.2%, 그중에 민주노총 5.8%만을 위한 법으로 날치기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법인지 다시 한번 야당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상정된 노조법 개악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그리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제한입니다.

먼저 근로자 개념 확대 관련해서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 규정에 모든 노무제공자를 추가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모든 노무제공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은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자영업자까지 근로삼권의 향유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 헌법 제33조에 정의된 근로삼권의 부여 대상인 근로자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사용자 개념 확대입니다.

야당은 노조법상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만약 법 개정이 된다면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노동조합법 체계에서 사용자 개념 인정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 간 협업을 위한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소수의 대기업이 대다수 근로자를 직접 채용·관리하는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변질

될 것입니다.

셋째, 노동쟁의는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분쟁으로 정의되나 개정안은 권리분쟁을 포함하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노동쟁의의 개념에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포함하고 노동쟁의의 최후수단적 성격을 삭제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차나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사항 등 쟁의행위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문제가 있으며 최후수단적 삭제와 맞물려 노사 간 모든 의견 불일치 사항을 쟁의행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등 노동분쟁의 폭발적인 증가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폭력·과포행위 이외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및 노동조합 임원, 조합원 등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 금지입니다.

야당은 노동삼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에 그 권리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불법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

를 벗어난 것입니다.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불법쟁의행위를 면책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라는 이유로 손해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

하는 것이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됩니다.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입니다.

오늘 소위에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

안은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합의해 온 노사 관행을 모두 무너뜨리고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노조법 개악안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IV.

## 상임위원회

### 1. 상정 법률안 목록

##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18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1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조세법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	조세법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3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1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
		1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 V.

## 본회의

1. 통과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세법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의안번호 2117165호

심사 진행 경과		
본회의	2022.12.23.	원안가결
	2022.12.27.	정부이송
	2022.12.31.	공포

### 제안이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기업 과세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안 제2조, 제76조의8, 제76조의9, 제76조의11, 제76조의12, 제76조의14, 제76조의18 및 제76조의19)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에서 모회사가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함.
- 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안 제13조, 제45조, 제46조의4, 제76조의13 및 제91조)  
사업연도 소득의 100퍼센트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외의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함.
- 다.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안 제18조의2 및 현행 제18조의3 삭제, 안 부칙 제15조제2항)
  - 1)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출자비율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출자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3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그 밖의 경우는 8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함.
  - 2)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라.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안 제18조의4 및 제57조제7항 신설)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외국납부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과의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접대비의 명칭 변경(안 제25조)

접대비의 사용목적이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접대비의 명칭을 업무 추진비로 변경함.

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안 제32조 및 제 42조의3 신설)

보험계약과 관련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시행에 맞추어 보험회사의 책임준 비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회사의 급격한 세부 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첫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익은 4년간 거치 후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55조)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00 억원 이하'와 '200억원 초과'로 단순화하고,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퍼센트의 세율을,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과 세표준 5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아.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안 제63조)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의 기준 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그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도모함.

자.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안 제75조의7)

- 1)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제출주기를 단축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 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 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 2) 상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 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 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 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 정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법인세율 변경 현황]								
과표구간	1998	2002	2005	2008	2009	2010	2012	2018
1억원 이하	16%	15%	13%	11%	11%	10%	10%	10%
1~2억원	28%	27%	25%					
2~200억원				25%	22%	22%	20%	20%
200~3000억원							22%	22%
3,000억원 초과							25%	25%
과세표준 구간	2개						3개	4개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미포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프랑스	38.0	34.4	44.4	34.4	34.4	32.0	28.4
한국	22.0	22.0	22.0	25.0	25.0	25.0	25.0
이탈리아	27.5	27.5	24.0	24.0	24.0	24.0	24.0
일본	23.9	23.4	23.4	23.2	23.2	23.2	23.2
미국	35.0	35.0	35.0	21.0	21.0	21.0	21.0
영국	20.0	20.0	19.0	19.0	19.0	19.0	19.0
독일	15.8	15.8	15.8	15.8	15.8	15.8	15.8
캐나다	15.0	15.0	15.0	15.0	15.0	15.0	15.0
G7 평균	25.0	24.5	25.2	21.8	21.8	21.4	20.9
OECD평균	23.5	23.3	23.1	22.5	22.2	21.6	2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 조세수집', p.60-61.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독일	29.8	29.8	29.9	29.9	29.9	29.9	29.9
일본	32.1	30.0	30.0	29.7	29.7	29.7	29.7
프랑스	38.0	34.4	44.4	34.4	34.4	32.0	28.4
이탈리아	31.3	31.3	27.8	27.8	27.8	27.8	27.8
한국	24.2	24.2	24.2	27.5	27.5	27.5	27.5
캐나다	26.7	26.7	26.7	26.8	26.6	26.2	26.2
미국	39.0	38.9	38.9	25.8	25.9	25.8	25.8
영국	20.0	20.0	19.0	19.0	19.0	19.0	19.0
G7 평균	31.0	30.2	31.0	27.6	27.6	27.2	26.7
OECD평균	25.2	24.9	24.8	24.2	23.9	23.3	2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 조세수집', p.60-61.

[우리나라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율]

(단위: %)

한국								OECD 평균
1980	1985	1990	1995	2000	2010	2015	2020	2020
11.0	11.4	12.8	11.6	14.1	13.9	13.1	12.1	8.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조세', p.111.

[OECD 주요국가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캐나다	3.8	3.9	4.1	4.2	4.2
한국	3.4	3.6	4.2	4.3	3.4
일본	3.6	3.7	4.1	3.8	3.1
영국	2.6	2.6	2.6	2.3	2.3
프랑스	2.0	2.3	2.1	2.2	2.3
이탈리아	2.1	2.1	1.9	2.0	2.1
독일	2.0	2.0	2.1	2.0	1.7
미국	2.0	1.5	1.3	1.3	1.3
OECD 평균	2.9	3.0	3.1	3.0	2.7

주: 법인소득과세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등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조세', p.111.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수]

과표구간수	해당 국가	
1개	35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2개	1개국	네덜란드
3개	1개국	룩셈부르크
4개	1개국	한국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조세', p.136

[기업의 총부담비율]

국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명목세율 (지방포함)	27.5	25.8	29.7	29.9	28.4	19	27.8
조세 및 총부담금	33.2	36.6	46.7	48.8	60.7	30.6	59.1

OECD: Effective Tax Rates  
 Worldbank: Total tax and contribution rate (% of profit) | Data  
 자료: 이상민, '세계개편안 효과,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2022. 8. 18, p.16.

주요발언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 김경협 의원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도 문제입니다. 어지간하면 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견 아닙니다.

법인세를 깎아 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이미 허무맹랑한 신화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내린 이후 기업 투자는 오히려 줄었고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만 325조에서 845조로 2배 이상 쌓였습니다. 나중에 최경환 부총리는 투자하라고 법인세 감면해 줬더니 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고 있다면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투자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주주 배당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의 배당 성향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 전 2008년 25.47%에서 감면 후 2012년에 22.74%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 지금 전세계 주요국들은 법인세를 오히려 증액하거나 슈퍼부자들에게 대한 횡재세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재정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등 민생예산을 삭감하더니 과표 3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더 이상 쌓아 둘 곳도 없습니다. 법인세 인하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안건인 상속·증여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들의 편법 상속과 증여 그리고 불공정거래의 온상이었던 일감 몰아주기를 다시 열어 주자

는 필수입니다. 편법 상속과 증여,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법입니다. 이런 법안을 우리 국회가 통과시켜 줘야 하겠습니까? 물가 걱정도 노동자들 임금인상을 자제하러던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부자 감세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민생은 보이지 않고 슈퍼부자들의 주머니를 더 불려 주지 못해 안달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가 과연 정상적인 정부란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슈퍼부자들은 배터져 죽고 서민들은 배고파 죽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양극화 심화는 내수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시장과 경제를 마비시키는 원흉입니다. 민생을 사지로 내몰고 경제를 악화시키는 망국의 길입니다. 슈퍼부자 감세안에 대한 부결로 국회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표



김경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님들과 의 많은 논의 끝에 정말 안타깝지만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진통 끝에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안타깝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드러

난 문제점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2023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법인 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고 비난했습니다. 법인 세최고 세율 인하는 소수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 대주주만 혜택을 본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인한 주주 배당금을 증가시킬 경우 세후 총수 일가 몫은 늘어난 배당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세후 국내 소액주주 몫과 국민연금 몫 그리고 세금의 합은 늘어난 배당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히려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면 국내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격의 인상 압력이 완화되어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이 완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뿐입니까? 대기업 세부담 감소로 전후방으로 연관된 관련 중소기업과 관련 근로자들에 대한 조세부담이 완화되면 납품가 인하 압력 경감 그리고 임금인상 여력 발생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들의 투자 여력 증가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임금인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막 대하게 나타날 것으로 본인은 확신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초부자 감세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 인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을 방지 하고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내 일자리 창출과 국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등 일석삼조, 아니 일석사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눈을 돌려 세계를 봐야 합니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7년 35%에서 2018년 21%로 무려 14%p 인하했습니다.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지금도 높다고 하는 프랑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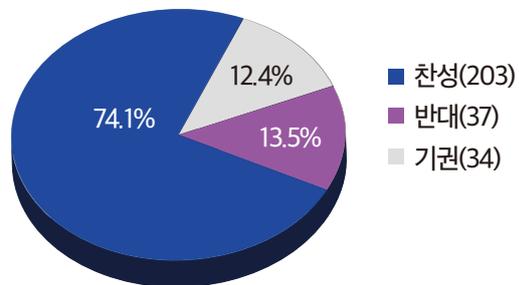
44.4%에서 2021년 28.4%로 무려 16%를 내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22%였던 최고세율을 경쟁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내릴 때 2018년 25%로 오히려 역주행, 3%를 올렸습니다. 유사한 기간 G7 평균이 2017년 25.2%에서 2021년 최근 20.9%로 무려 4.3% 낮췄다는 수치를 명심하십시오. OECD 평균이 2017년 23.1%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1년 21.5%로 1.6% 떨어졌다는 점,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 법인세율 1% 인하라는 여야 합의 안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해외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대승적 견지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 인하 논의를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찬성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잡한 누진세율

체계 개편과 최소한 G7 평균 또는 OECD 평균 이하 수준의 법인세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간 지속적인 합의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국회에서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가 동참하고 오로지 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중대한 재논의를 오늘 찬성하신 후에 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2.12.23 / 2022.12.23
- 발의자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40인(본회의 수정안)
- 표결 의원 : 재석 274인 / 재적 299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74인(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



#### YES 찬성 (203인)

강기윤 강대식 강민국 강병원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구자근 권명호 권은희 권철승 김경만 김교흥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철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환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판 김 웅 김윤덕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정 김형동 김희재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노용래 류성걸 맹성규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광운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주안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현진 백종현 백혜련 변재일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일준 서정숙 설 훈 성일종 소병철 송갑석 송석준 송언석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안규백 안병길 안호영 양금희 양기대 양향자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이상호 위성곤 유경준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윤관석 윤두현 윤상현 윤영석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상현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 용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인선 이재명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철규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이형석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희용 조명희 조수진 조승래  
 조은희 조응천 조정식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천준호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재형 최춘식 최형두 태영호 하영제 하태경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 희 의원



**반대 (37인)**

강민정 강은미 김경협 김남국 김영배 김원이 김의겸 김주영 김홍걸 도종환  
 류호정 문정복 민형배 박영순 박용진 박주민 배진교 소병훈 송옥주 심상정  
 안민석 양이원영 어기구 용혜인 윤건영 윤준병 이상민 이용빈 이은주 이인영  
 이탄희 임종성 장혜영 정필모 최강욱 한준호 황운하 의원



**기권 (34인)**

강득구 강선우 강훈식 권인숙 기동민 김두관 김민기 김수홍 남인순 서동용  
 서영석 송기현 신동근 신현영 양경숙 양정숙 우원식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이병훈 이수진(비) 이용선 이용우 인재근 장제원 장철민 전해철 정춘숙 조오섭  
 최종윤 최혜영 허 영 홍익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 폐회

# 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2117169호

심사 진행 경과		
본회의	2022.12.23.	원안가결
	2022.12.27.	정부이송
	2022.12.31.	공포

### 제안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상향하여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하며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그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 인상(안 제12조제2호나목)  
종합부동산세의 고가주택 기준에 맞추어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 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안 제52조제4항 단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함.
- 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 제55조)  
6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금액 '1천 2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이하'로 넓히고, 15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함.
- 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안 제59조의2제1항)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연령이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함.
- 마.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안 제59조의3제1항, 안 제64조의4 신설)
  - 1) 종전에는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는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강화함.

- 2) 종전에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1천 200만원까지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15퍼센트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안 제81조의11 및 제164조의3제1항)

- 1)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 2)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변경(안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104조제1항제11호)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주주의 범위를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대주주'에서 시가총액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고액주주'로 변경하여 과세기준을 완화함.

아. 친족 간 증여 시 필요경비 계산 등 합리화(안 제97조의2제1항 및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배우자 등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고,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조세형평을 제고함.

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안 제4조제2항제2호, 법률 제177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등)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 1월 1일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2년 유예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주요발언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 장혜영 의원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 법은 시민을 위하는 법도, 민주주의를 위하는 법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쌓아 올리는 법도 아닙니다. 이 법은 오히려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대원칙, 세금은 능력에 맞게 부담한다는 응능의 원칙,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고 국회 회의는 공개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폭탄 같은 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를 나란히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의 증권거래세를 인하는 내용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78년도의 일입니다. 당시 재무부장관이었던 고 김용환 장관은 제도 도입 당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정도이지만 투자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거래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자본이득 과세를 위해서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이 정론이지만 우리나라에 아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증권거래세의 형태로 세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증권거래세가 43년 넘게 이어져 오다가 비로소 2000년이 되어서야 거래세가 아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우리나라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양도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아니라 한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에 한해서 과세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그 자체보다는 소위 대주주 일가에 의한 편법 증여를 막는 것이 그 도입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대주주 요건이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국회는 이것을 2013년에는 50억 원으로, 2020년에는 10억 원으로 낮추면서 단계적 과세 대상 확대를 도모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마침내 국회는 금융투자세를 도입해서 자본이득에 대한 보편적 과세를 실현하는 귀중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부터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었던 거래세 세율을 점차 인하해서 세제를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바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손으로 결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2020년 말에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투자자들의 반발 앞에서 국회의 과세원칙과 방향성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에 국회가 정한 결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제도 도입의 수순이었지만 갑자기 우리 정치권은 동학개미 핑계를 대면서 이것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극심해졌고 마침내 오늘 우리 국회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엉뚱하게 거래세만 낮추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여야가 공히 자본이득과세에 대해서 함께 쌓아 올려 온 이 공든 탑을 스스로 무너뜨릴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내용은 국회의 정상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곳 본회의장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법안은 조세소위에서 딱 한 번 형식적인 논의를 거쳤을 뿐 그 어떤 합의도 의결도 없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소소위로 보내져서 2주 이상 밀실 협상만을 통해서 정해진 조세양당주의의 산물일 뿐입니다.

국회가 오랜 시간 함께 쌓아 올려 온 여러 원칙을 이렇게 단번에 부수는 폭탄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안 그래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의원들 스스로 내던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시민들에게 반갑지 않은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걷은 세금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복지를 가능하게 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랜 사회계약을 지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것은 그냥 또 한 번의 표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와 우리 사회계약에 대한 국회의 신념의 표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려 온 조세의 대원칙이 이 자리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이 법안에 대해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표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준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  
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  
회 소속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배준영 의원입  
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  
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가 필  
요합니다. 지금 우리 증시 여건은 당시  
와 다릅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고점 대  
비 30% 이상 주가가 하락했고 거래량  
이 위축되는 등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고 고금리·고물가·  
고환율로 퍼펙트 스톱이 우려되는 상  
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  
행된다면 과세 대상이 1.5만 명에서 15  
만 명으로 10배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세부담은 1.5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시장으  
로 이탈하고 국내 증시는 요동칠 것입  
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만일 일주일 뒤부  
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증시가 패닉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  
다. 그렇지 않고서야 5만 명이나 되는  
개미 투자자들이 국회 기재위에 2년 유

예 청원을 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  
것이 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웃 대만의 실패 사례도 봅시다. 대만  
은 시장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  
서 상장주식 전면과세를 시도했는데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시장충  
격으로 도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득  
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합  
니다. 금융투자세 시행을 여야가 합의  
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예방을 한답시고 독감  
으로 열이 펄펄 나는 아이에게 백신을  
맞히는 의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렇지 않아도 체력이 떨어져 힘에 겨운  
증시에 감당 못 할 무거운 짐을 엮는 것  
이 맞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여 증시  
가 온전한 체력을 갖췄을 때 과세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금융투자소득  
세 시행에 앞서 먼저 개인투자자에 대  
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정착된 이후에 금융투자소  
득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 금융회  
사들도 시스템 구축 준비 과정에서 제  
도개선 사항이 다수 발굴되어 추가적  
인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금  
용투자소득세 시행은 불가능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높은 물  
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  
민·중산층의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간 물가상승에  
도 불구하고 08년 이후 15년간 과표구  
간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실질 세부  
담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고유가·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  
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을 조정하여 서민·중산층  
의 세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이에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조정하되 총급여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축소하여 세  
부담 경감폭을 줄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이번 소득  
세법 수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 유예, 과표구간 조정 외에도 주거  
비,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을 완화  
하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하여 퇴  
직연금소득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서  
민·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통해 다가  
올 한파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  
까? 부디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소득  
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특집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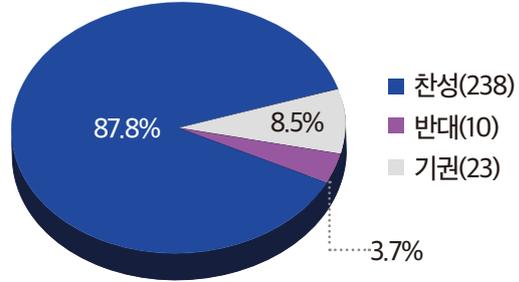
수원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 기획예산

###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2.12.23 / 2022.12.23
- 발의자 / 제안자 : 신동근의원 등 40인(본회의 수정안)
- 표결 의원 : 재석 271인 / 재적 299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71인(찬성 238인, 반대 10인, 기권 23인)



#### YES 찬성 (238인)

- |     |     |     |        |     |     |      |     |      |     |
|-----|-----|-----|--------|-----|-----|------|-----|------|-----|
| 강기윤 | 강대식 | 강득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준현 | 강훈식  | 고민정 | 고영인  | 구자근 |
| 권명호 | 권인숙 | 권철승 | 기동민    | 김경만 | 김경협 | 김교홍  | 김기현 | 김남국  | 김도읍 |
| 김미애 | 김민기 | 김민석 | 김민철    | 김병기 | 김병욱 | 金炳旭  | 김병주 | 김상훈  | 김석기 |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환 | 김수홍    | 김승남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선  | 김영식 |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예지    | 김용판 | 김 옹 | 김원이  | 김윤덕 | 김의겸  | 김정재 |
| 김정호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태호 | 김학용  | 김한정 | 김형동  | 김홍걸 |
| 김희재 | 김희곤 | 김희국 | 노용호    | 노용래 | 도종환 | 류성걸  | 맹성규 | 문진석  | 민병덕 |
| 민홍철 | 박광온 | 박대수 | 박덕흠    | 박범계 | 박성민 | 박성준  | 박수영 | 박완주  | 박재호 |
| 박 정 | 박정하 | 박찬대 | 박형수    | 박홍근 | 배준영 | 배현진  | 백종헌 | 백혜련  | 변재일 |
| 서범수 | 서병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일준 | 서정숙  | 설 훈 | 성일중  | 소병철 |
| 소병훈 | 송갑석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호 | 신동근  | 신영대 | 신원식  | 신정훈 |
| 신현영 | 안규백 | 안민석 | 안병길    | 안호영 | 양경숙 | 양금희  | 양기대 | 양정숙  | 양향자 |
| 어기구 | 엄태영 | 오기형 | 오영환    | 우상호 | 우원식 | 유경준  | 유동수 | 유상범  | 유정주 |
| 윤건영 | 윤관석 | 윤두현 | 윤영석    | 윤영찬 | 윤재갑 | 윤재옥  | 윤주경 | 윤준병  | 윤창현 |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달곤 | 이동주 | 이만희  | 이명수 | 이병훈  | 이상헌 |
| 이성만 | 이소영 | 이수진 | 이수진(비) | 이양수 | 이 용 | 이용빈  | 이용선 | 이용호  | 이원욱 |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장섭    | 이재명 | 이정문 | 이종배  | 이종성 | 이주환  | 이채익 |
| 이철규 | 이태규 | 이학영 | 이해식    | 이현승 | 이형석 | 인재근  | 임병헌 | 임오경  | 임이자 |
| 임종성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장제원 | 장철민 | 전봉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주혜 |
| 전해철 | 전혜숙 | 정경희 | 정동만    | 정성호 | 정우택 | 정일영  | 정점식 | 정진석  | 정청래 |
| 정춘숙 | 정희용 | 조경태 | 조명희    | 조수진 | 조승래 | 조은희  | 조정식 | 조해진  | 주철현 |
| 주호영 | 지성호 | 진선미 | 천준호    | 최기상 | 최연숙 | 최영희  | 최인호 | 최재형  | 최종윤 |
| 최춘식 | 최형두 | 태영호 | 하영제    | 한기호 | 한무경 | 한병도  | 한정애 | 허은아  | 허종식 |
| 홍기원 | 홍문표 | 홍성국 | 홍영표    | 홍익표 | 홍정민 | 황보승희 | 황 희 | 희 의원 |     |



### 반대 (10인)

강은미 류호정 박용진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이상민 이은주 장혜영 정필모 의원



### 기권 (23인)

강민정 강병원 김두관 김상희 김주영 남인순 문정복 민형배 박병석 박영순  
박주민 서동용 송기현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우 이탄희 조오섭 최강욱 최승재  
최혜영 허 영 황운하 의원

# 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2117151호

심사 진행 경과		
본회의	2022.12.23.	원안가결
	2022.12.29.	정부이송
	2022.12.31.	공포

### 제안이유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며,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안 제8조의3)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매입한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를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2)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서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서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인수대상외국법인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 법인을 추가함.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등(안 제16조의2)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되, 벤처기업별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하지 아니하도록 함.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대상 확대(안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분할 납부특례를 종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권상장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도 분할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확대(안 제18조의1항)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6)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안 제18조의2)

종전에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여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9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 제공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안 제24조)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6으로 상향하고,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함.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29조의4)

근로소득 증대를 위하여 직전 3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함.

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안 제29조의8 신설)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여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과 일·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안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현행 최대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입한 자산의 가액이 총 사업용자산 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도록 함.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한도 확대 등(안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부모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3)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안 제30조의7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함.

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 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에 위치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 중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공장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2)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성장촉진지역·인구감소지역·위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기간을 최대 12년까지로 확대함.

사.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안 제91조의22 신설)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95조의2제1항)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5천500만원 초과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2'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15'로 각각 상향함.

자.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안 제100조의5제1항 및 제100조의29)

총급여액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을 인상함.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 등 완화(안 제100조의3, 제100조의5제4항 및 제100조의28)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산 기준을 '1억4천만원 이상'에서 '1억7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

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04조의31제3항 및 제 4항 신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로서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카.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의 상향 조정(안 제121조의13)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추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하고,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금액의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함.

타. 그 밖의 조세특례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정비(안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성실사업자가 지출한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100분의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하며,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59호) 및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69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참고자료

[신성장·원천기술분야]		
분야	구분	기술
수소 (4개)	생산	그린수소* 및 블루수소** 생산기술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배출 없이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생산 ** 수소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나, 이를 포집하여 수소생산
	유통	수소를 액체·암모니아·액상 유기물 저장체 등으로 저장하는 기술 등
	활용	수소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등
산업 공정 (11개)	철강	수소유동환원 기반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 철 생산과정에서 탄소 대신 수소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제철방법
	시멘트	CO2 저감 시멘트 생산을 위한 연·원료 대체기술
	석유화학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 기술 등 * CO2 배출이 많은 메탄 열분해 대신 전기에너지를 활용하여 나프타를 분해

E효율수송 (4개)	E효율	데이터센터 냉공조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
	수송	친환경(하이브리드, 전기구동) 굴착기 개발 기술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득세	873	910	954	1,182	1,254
법인세	22,305	26,430	26,342	36,266	43,863
합계	23,178	27,340	27,296	37,448	45,117

주: 2022, 2023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전후 비교]

증진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①R&D 설비(1/3/7) ②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안전 설비(1/5/10) ④에너지절약 시설(1/3/7) ⑤환경보전 시설(3/5/10) ⑥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공제율(%)</th> <th colspan="3">당기분</th> <th rowspan="2">증가분</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반</td> <td>1</td> <td>3</td> <td>10</td> <td rowspan="2">3</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3</td> <td>5</td> <td>12</td> </tr> <tr> <td>국가전략기술</td> <td>6</td> <td>8</td> <td>16</td> <td>4</td> </tr> </tbody> </table>	공제율(%)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4
공제율(%)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4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소득세	217	491	808	808
법인세	6,009	12,969	23,378	23,378
합계	6,226	13,459	24,186	24,186

주: 2022, 2023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주요발언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양향자 의원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정우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 근본적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대해 주십시오. 정부는 기재위 의결 절차도 없이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5%에서 8%로 완전히 후퇴시켰습니다. 여야, 정부, 산업계, 학계가 전쟁터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혜를 모아 공동발의한 K-칩스법을 반쪽짜리로 전략시켰습니다. 산업계는 세 가지 이유에서 이 정부 법안을 반반대합니다.

첫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현재 25%입니다. 미국은 25%의 투자 세액공제와 함께 지자체가 나서서 재산세의 80% 이상을 감면해 줍니다. 중국은 이미 고급공정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가장 원하는 곳이 바로 중소·중견기업입니다. 반도체

대기업이 국내의 투자를 줄이거나 멈추면 중소·중견기업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코리아 엑소더스를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 정부의 뒷걸음질은 반도체 기업들의 한국 탈출 허가를 발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글로벌 불황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 모두 적자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를 하루하루 가쁜 숨을 쉬는 기업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일입니다.

8%는 전진이 아닌 후퇴입니다. 개선이 아닌 개악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고 대한민국을 반도체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어내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오늘 의원님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명줄 반도체를 지켜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표



양향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석 의원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해서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4%의 추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증가분에 대한 4%의 세액공제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이 낮아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만은 우리보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낮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대만도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미국과 동일한 25%의 세액공제를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반도체 설비투자가 아닌 반도체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행 15%에서 25%로 상향될 예정이며 설비투자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30~50%,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8~20%보

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내년부터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서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미국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국은 첫째, 1990년만 하더라도 반도체의 전 세계 생산 비중의 3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1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의 주요한 원인은 결국은 미국의 생산비용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미국은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2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많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등 미국의 경쟁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투자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제율을 단순 비교해서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으로 8%에서 20%까지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영하게 되면 결국은 대만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국내의 반도체 안정적인 공급과 또한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미국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야 될 그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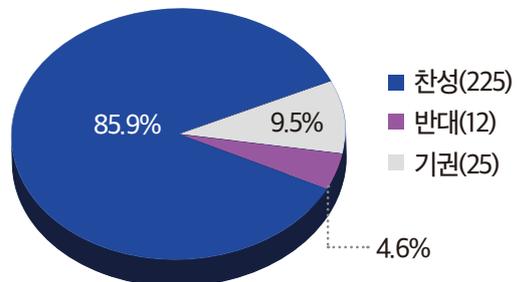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정도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으로도 충분히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또한 내년에는 1조 원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반도체 분야의 인력 양성과 R&D 지원 등에 집중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통해서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투자 촉진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 2~3년 내에 반도체 핵심기술 및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2.12.23. / 2022.12.23
- 발의자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40인(본회의 수정안)
- 표결 의원 : 재석 262인 / 재적 299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62인(찬성 225인, 반대 12인, 기권 25인)



#### YES 찬성 (225인)

강기윤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구자근 권명호 권은희 권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선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판 김 옹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정 김형동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류성걸 맹성규 민병덕 박광운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민 박성준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정하 박주민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변재일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 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기현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엄태영 오영환 이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윤건영  
 윤관석 윤두현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상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 옹 이용빈 이용선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제원 장철민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응천 조정식 조해진 주호영 지성호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재형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태영호 하태경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허 영 허은아 홍문표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황 희 의원

 반대 (12인)

강은미 김영배 김희재 류호정 양향자 어기구 용혜인 이은주 장혜영 전해숙  
 조명희 주철현 의원

 기권 (25인)

김영식 김홍걸 도종환 민형배 민홍철 박수영 박완주 배진교 송석준 심상정  
 양이원영 양정숙 오기형 유정주 윤상현 윤영찬 윤창현 이병훈 이상민 이용우  
 최강욱 한기호 허종식 홍기원 홍석준 의원





#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 용어해설

## 제안 ..... 1) 의원 발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 2) 위원회 대안마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 회부 .....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1①).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 상정 .....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49 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 §59의2).

## 제안설명 ...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 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검토보고 ...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국회법」 §58⑧),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대체토론** ...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 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국회법」 §58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공청회** .....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⑥). 「국회법」은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조심사** ...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쟁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씩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58⑤).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 §57⑦-§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찬반토론** ...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 §106).

**심사보고서** ...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66①).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결** .....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 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 번안동의(「국회법」 §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 §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의 부의요구(「국회법」 §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더라도 원안의결로 본다.

### 2)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 3)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회법」 §95④)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 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87).

**정부이송** ……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53①, 「국회법」 §98).

**공포** ……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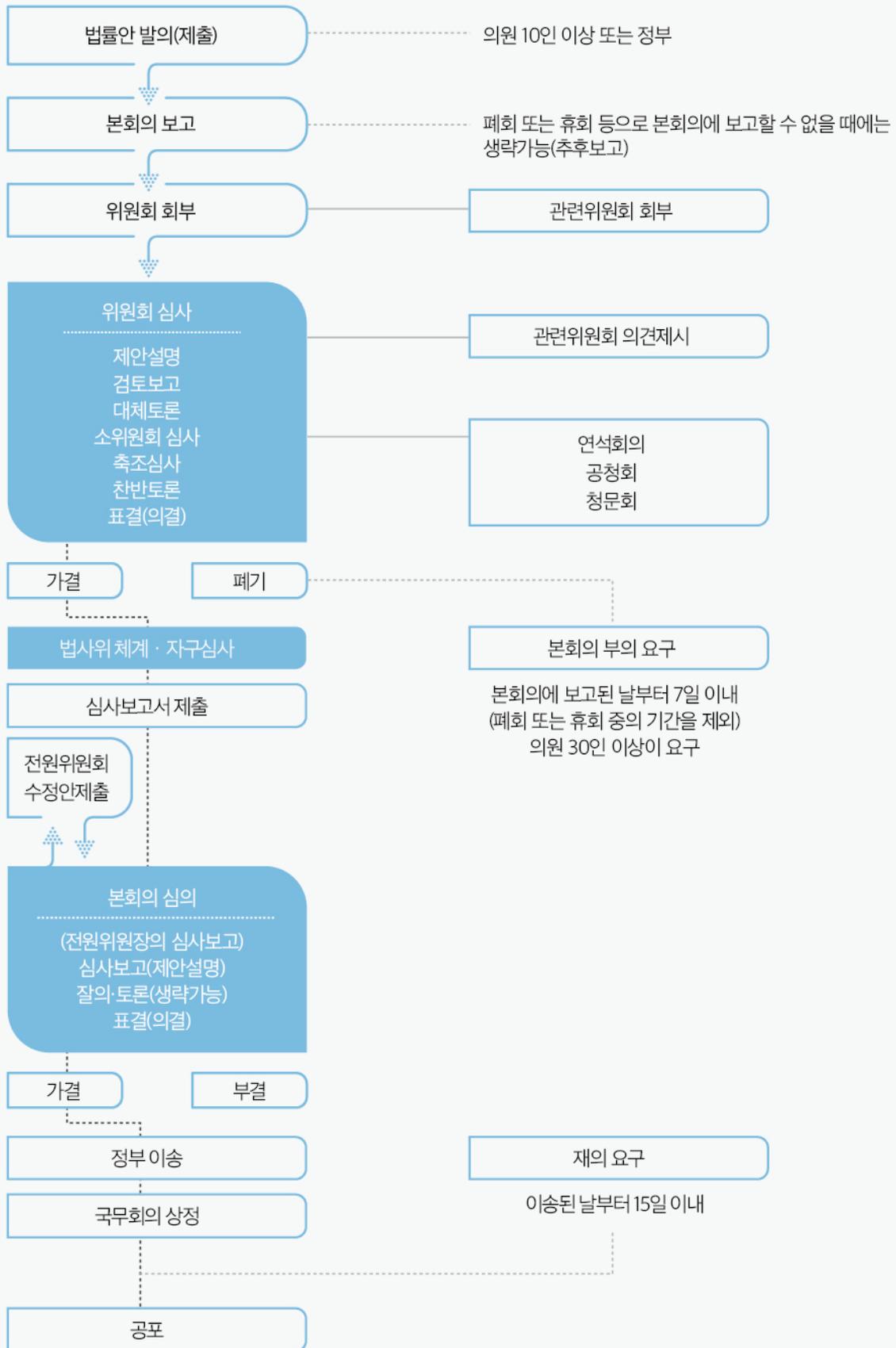




# R & B Policy & Business Report



## 법률안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DAERYOOK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16층  
[www.draju.com](http://www.draju.com)